

〈해외 임업정보〉

중국 동북지방의 임정변화와 산림관련법

유 병 일 / 임업연구원 정보실장
농학박사

1. 서언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발상지로서 옛날부터 국가가 존재했으며, 인류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목재·금도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중국대륙에서는 봉건사회가 계속되었고 이에따라 임업에 대한 관심결여,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산림은 폐쇄, 개방을 거듭하여 산림의 파괴가 극심하였다.

특히 19세기 말에는 열강의 침략으로 중국대륙은 반봉건·반식민지 상태로 변하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까지 내전 상태가 계속되어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이후 공산집권이 집권한후 최근 우리나라와 수교하기 까지 폐쇄경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와는 인접국인 중국의 임업 역사에 대하여 중국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하고 중국 산림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임정의 변천

중국의 광대함에 체계적인 임정의 변화를 고찰하기 곤난하므로 중국임업의 중심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임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3기로 나눌수 있는데 1기 임업은 봉건사회 전기·중기(1840년이전), 2기임업은 봉건사회 후기·말기, 중화민국시대(1840~1949), 3기임업은 중화인민공화국시대(1940년이후 현재까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3기는 다시 4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1) 1기 임업(1840년 이전)

봉건시대의 산림은 매우 풍부하여 대규모의 산림벌채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봉건시대의 산림은 주로 수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을 뿐 산림의 파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기 임업(1840~1949)

봉건시대 후기에 들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목재의 수요가 증대되어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되었고, 산림의 보호와 조림을 강력히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청조 말기의 부패와 외국 열강에 대한 국민당의 약화로 우량임분의 벌채권은 모두 열강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특히, 동북지방에서의 산림파괴는 심화되었다.

청조시대 1858년, 1860년 제정러시아 황제와 불평등조약인 《중아아이휘 조약》과 《중아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약 100만km²의 중국 영토를 분할강점하게 되었으며, 이중 산림면적은 약 54,716천ha로서 동기간 동북산림면적 28,977천ha의 1.8 배 축적은 62.9억m³로서 동북산림 총축적 36.5억m³의 1.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소련에 강점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에는 “동성철로공사계약에 의한 공동 경영”을 구실삼아 대홍안령산림지대를 관통하는 철도를 부설하였으며, 철도부근의 산림을 임의대로 벌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벌이 발생하여 철도변 30km이내의 산림이 약 20년에 걸쳐 모두 벌채됨과 동시에 흑룡강성, 길림성 등 각지역의 산림도 러시아가 마음대로 벌채하게 되었다.

이후 동북임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임업 중심지가 압록강·두만강유역으로 옮겨갔는데 이들 지역의 임업은 주로 러시아 손에 장악되고 중국정부는 감히 간섭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한 후 중국대륙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익을 분담하게 됨에따라 남만주의 권리는 일본에게 넘겨 주고 북만주는 러시아가 계속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광서 31년(1905) 일본의 북경중일회의 동삼성사건조약에 의거 광서 34년(1908)에 중일 양정부합동으로 “압록강 채목공사”가 설립되었으나, 실제 권력은 모두 일본이 가지게 되었으며 압록강유역의 산림은 모두 일본에게로 귀속되었다. 한편, 일본은 1916년을 전후하여 송화강유역의 산림에도 진출하여 “길림림업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21년경에는 일본세력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북만주림업지대를 독자경영 혹은 중일합작형태로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중의 특징은 봉건계급과 열강제국주의들이 산림수탈로 많은 산림이 벌채되었다는 점이다.

3) 3기 임업(1949~현재)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자 임정도 크게 변화되었으나, 이제는 산림관계법이 안정되어 중국임업의 발전과 진흥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북동인민정부는 먼저 《중국토지법주요강령》에 의한 “대삼림구분부관리”의 조항에 따라 임업기구를 설립하고 “동북해방지역 삼림관리 잠정조례”, “동북해방 삼림보호 잠정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과거 열강과 기존정부가 갖고 있던 임업 시설·공장 등을 모두 접수하였다.

1949년 9월 중국인민림업정치 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에서 『지하자원과 수자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국유산림과 기타 자원은 모두 전체인민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중국 산림 소유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기초를 다지게 되

었다. 이와같은 산림의 국유화와 함께 동강령에는『산림을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임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새 중국의 건국 이후의 임업강령의 하나이다』라고 규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됨에 따라 중국의 임업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건설방식에서 발전되게 되었다. 중국임업정책은 건국 이래 현재까지를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1단계(1950~1952)는 국민경제 회복시기, 제 2단계(1953~1957)는 사회주의개조 및 건설시기, 제 3단계(1958~1976)는 급변발전시기, 제 4단계(1976~현재)는 사회진흥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 제 1단계(1950~1952, 국민경제회복시기)

1950년대부터 1952년까지 중국은 3개년의 국민경제회복시기였다. 1950년 5월 16일에 정무원에서는『전국임업사업에 관한지시』를 발표하여 중국의 임업발전계획, 기본방향, 임무, 기구 등을 규정하였는데 『보편적으로 호림하고 중점적으로 조림하여 합리적으로 벌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임업건설방침』을 정하였으며, 중점조임, 합리적 벌채, 목재절약, 산림조사, 인력양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임업계획이었다.

『동지시』에는『공유림은 반드시 중앙인민정부 임업개간부 혹은 중앙에서 각급 임업기구에 위탁하여 경영벌채하되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목재를 공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따라 중국에서는 임업부문에 중앙집권경영관리체계가 확립하게 되었다.

『토지개발법』이 1950년 6월에 공포되었

는데, 동법 16조에 「몰수하고 징수한 산림, 다산, 오동나무산, 황무지 및 기타 토지는 반드시 적당한 비례로 보통 토지처럼 환산 하며, 동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대산림, 대황산, 대황무지는 모두 국가소유로 하며 국가가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산림의 국가소유정책에 의하여 과거 대규모 산림소유자로 부터 몰수한 임업기업(임장)과 목재공사를 전인민소유제의 임업기업소로 만들고, 소유증을 발급해 주고 소유자의 자유경영·매매 및 대여권리를 인정하였다.

1950년 이와같이 산림소유제도를 개편한 중국정부는 1951년 『농림생산의 결정』을 제정하여 산림에 관한 권리, 벌채, 조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소유산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산에 화입과 남벌을 금지하고 임산연료채취 지역을 정하여 채취한다. 이와함께 인민을 동원하여 나무와 유실수 식재를 도모한다.

② 산림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서의 나무와 풀뿌리 채취를 금지하여 황무지와 경사지의 채굴을 금지한다.

③ 인민공하여 황무지와 경사지의 채굴을 금지한다.

④ 인민공동소유의 황산과 황무지는 인민을 동원하여 조림하며 조림후 임권은 조림자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으로서 『농림생산의 결정』 내용도 의거 인민들의 조림참여가 매우 활발해졌으며 조림율도 증대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을 통하여 임업정책에서 임권을 인정하고 국유림과 농민소유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

며, 이에따라 농촌생산력이 크게 증가되었고 임업분야도 크게 발전되었다.

④ 제 2단계(1953~1957, 사회주의 개조 및 건설시기)

1953년부터 중국은 전면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 돌입되었는데, 국민경제 1차 5개년 계획(1953~1957)은 임업부문에도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 임무는 인민동원에 의한 조림·육림을 발전시키며, 원시림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목재생산규모를 확대시켜 1957년에 목재생산량을 2,000만m³에 도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69%를 국영별채기업소가 생산하도록 하고 이에 알맞게 임업생산조직과 관계기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업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대대적으로 조림·육림하여 합리적으로 벌채하고, 합리적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임업 발전』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1953년 정무원에서는 『민중을 동원한 조림·육림·호림사업을 실시하는데 관한 지시』를 시달하였으며, 1956년에는 『국유림주벌시행규정』 등 임업법규와 정책을 제정·수립함으로써 임업발전을 구체화시켰다.

제 1차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임업에서 개별경제와 국가계획경제간의 모순이 극심하게 되었고, 개별경제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임업생산 합작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시기에 농업합작화의 쉬현과 농업의 사회주의개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업생산에서 호조합작을 발전시켜 나갔다. 산구·임구농민들은 토지개혁 당시 분배받은

산림을 임시호조조, 장기호조조 등을 통해 합작사에 출연한 후 출연비중에 따라 수익 배당금을 나누기도 하였다.

당과 정부는 임업호조합작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임업의 특수성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주요한 조치의 하나로 임업농민이 생산한 목재는 호조합작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조약을 맺고 준수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와반대로 자류림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관리하에서 만 목재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조약을 맺고 준수하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으로 개체임업 농민들이 호조합작에 참가하는 적극성을 보장하여 주었고, 목재에 관한 엄격한 시장관리는 목재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개조를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5개년계획의 지도 밑에 국유임구의 임업생산은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새로 건설된 임업공업기업소는 원시림의 적극적인 개발이용을 주도하였다. 이와 함께 벌채적지의 개신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삼림공업국과 삼림경영소를 건립하여 전문적으로 개신영림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양기관의 설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임업국으로 재통합하게 되었다. 이시기 임업의 주요정책은 1953년 정무원의 『인민을 동원한 조림·육림·호림을 실시하는데 관한 지시』와 1956년의 『국유림주벌시행규칙』 및 국무원의 『죽림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관한 통지』 등이 있다. 이와같은 법규와 정책은 산림에 관한 벌채이용, 개신육성, 보호관리 등의 면에서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이 시기 임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사회주의건설 경험이 부족하고 소련의 발전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임목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국영림업국의 생산과정에서 원목생산을 위주로 하고 육림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임산공업부가 분리, 설치됨으로서 많은 산림이 파괴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중국 임업건설은 개체임업농민소유제가 집체소유제로 변모하는 사회주의개조가 완료되었고, 중국사회주의임업체계 - 전인민소유제의 임업과 군중집체소유제임업 및 국가집체가 채취한 다종형식의 연합경영림업체제 -를 확고히 하는 시기로서 중국 임업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④ 제 3단계(1958~1976, 급변발전시기)

1958년부터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미진하였던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계총·각부문·각지역에서 『공산풍』이 강하게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같은 『공산풍』은 법률로 『은 법률로』는 법률로 규정된 임업정책을 크게 파괴시켰다. 즉, 임목의 집체 소유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임권의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산림지역에서는 산림관리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중국 건국이래 산림파괴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임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구호로써 끝나게 되었다.

1958년 4월 중국 중앙국무원의 『전국 대규모조림에 관한 지시』에서 『전국산림면적을 10년 내에 배로 늘려 즉, 현재의 1억ha를 2억ha로 확대시키고 전국평균산림피복률을 10%에서 20%로 증가시킴으로써 전국축적량을 금후 15년 이내에 80억m³에 도달시킬 것』을 명령함으로써 임업부에서는

대규모의 조림을 실행해야 하고 인민들에게 달성할 수 없는 조림량을 할당하게 되었다.

1960년 겨울에야 비로소 무리한 목표할당을 인식하고 농촌사업에서의 『공산풍』의 오류를 시정하였는데, 임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1년 『임권을 확정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임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약간의 정책규정(시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금후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누구의 소유』라는 원칙을 재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원개인이 심은 분산된 임목은 개인소유이며, 임목소유권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고정하고 다시 변동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다. 생산대대와 생산대에서 무상으로 사원개인의 나무를 벌채한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정책을 재언명하였는데 이는 대약진시기 임업에 대한 파괴를 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3년 5월 20일 국무원은 『산림보호조례』를 발표하여 이 시기의 임업정책을 처음으로 입법화하였다. 동조례는 모두 7장 40조로서 총칙, 호림조직, 산림관리, 산불예방과 진화, 병충해방제, 장려와 벌금,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가 임권에 대한 보호, 산림경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산림경영에 대한 내용은 『국유림은 국유림장에서 책임경영하며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의 모든 산림은 산림대가 전담경영하고, 생산대경영에 부적합한 것은 인민공사 혹은 생산대대에서 전업대를 조직하여 경영해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임목은 사원이 책임경영하고 수익분배도 합동으로 행해야 한다』, 『집체소유의 산림은 산림의 생장법칙에 따라 매년별 벌

채수량, 규격, 시간, 장소를 정한 다음 승인을 받아야 별채할 수 있다』, 『산림은 별채한 뒤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대로 기간내에 개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964년 중국은 임업육림기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집체림구 임업농민이 목재와 대나무등의 임산물을 판매하는데 대하여 장려제도를 수립,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임업이 발전패도에 들었을 때 「문화혁명」이 1966년에 발발되어 『4인방』은 극렬한 『공산풍』을 일으켜 그간 사원개인이 식재한 모든 임목을 『자본주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모두 별채하였으며, 『누가 심으면 누구의 것』이라는 임업정책도 소멸되는 등 임업정책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임업은 정체상태에 달하게 되었다.

④ 제 4단계(1976~현재, 진홍시기)

1966년대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이 1976년 『사인방』이 축출됨에 따라 종료되었을 때 10년간의 산림 황폐는 극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8년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문란해진 정책이 안정됨에 따라 임업정책과 임업법규도 체계화되었다.

1981년 3월 국무원은 전국임업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임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약간의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동 『결정』은 임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 임야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조림·육림을 추진시켰으며, ② 목재별채를

계획실행하였고, ③ 임업자금을 보조하였고, ④ 목재종합이용과 절약정책을 수립하고, ⑤ 임구의 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임야소유권의 명확은 산권·임권의 인정과 자류산의 지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임업생산 책임제가 명확히 되었다.

동 『결정』은 산림권이 과거부터 명확한 것은 모두 승인하고, 정부가 임권증을 발급하여 다시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산권·임권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산임권증을 발급하고 서로 상이할 때는 산권증과 임권증이 별도로 교부되었다.

이에따라 과거부터 산권·임권에 분쟁이 있던 지역은 분쟁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분쟁이 계속 될 경우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자류산』이란 인민이 임산연료와 필요한 원목을 확보하고, 다각적 경영을 발전시켜 인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집체에서 사원들에게 분배한 산(주로 황폐된 강변이나 모래톱)을 의미하는데 집체내에 황폐임지가 많은 지역은 많이 분배되고 없는 지역은 분산돼 있는 임지와 관목림을 분배 할 수 있으나, 임목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집체림은 사원들에게 자류산으로 분배가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분배된 자류산은 사원이 임의로 식재·관리·별채할 수 있으며 별채수익은 집체에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2세에게 자류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하여 지상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배된 자류산은 기간내에 녹화가 되어야 하며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는 집체에서 다시 회수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와 함께 임업분야에서 장기간동안 『공산풍』적 영향을 받아 많은 조림이 이루어 졌으나, 임업경영관리는 사회주의국가의 폐단인 『큰가마의 밥』같이 관리책임이 분명하지 못하여 임목생장율과 보존율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결정』은 국영림장과 사대에서는 임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에 발효되어 시험적으로 운영되던 삼림법 시행안을 1984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새로운 삼림법을 공포하였고 이후 삼림법 실시세칙, 삼림벌채, 개신관리법 등이 계속해서 제정됨에 따라 삼림관리와 용재생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6년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목재가격이 조절되는 등 중국임업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개방화에 따른 횡적경제체계의 발전·다종경제, 상품경제의 도입 등이 임업분야에도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임정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의 급속한 시장주의 경제화는 산림의 남벌을 초래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 중국 임정의 앞날은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삼림법

중국에서는 1963년 공무원이 『삼림보호조례』를 발표하며 이 시기의 임업방침정책을 법률형식으로 처음 종합 고정화시켰는데,

이 『조례』는 모두 7장 40조로서 총칙, 호림조직, 산림관리, 산불예방과 진화, 병충해방제, 장려와 벌금,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조례는 1979년 2월 23일 제 5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6차회의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시행안)으로 발전하였으며, 시행(안)은 모두 7장 42조로 이루어졌다.

주내용으로 1장은 총칙으로 중국이 소면적산림을 보유하는 국가임을 고려하여 4화(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가지 운동)건설에 적응하기 위하여 건국 이래의 실천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임업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림·육림·벌채의 종합적 산림이용”의 방침으로 전국의 산림을 방호림,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 특용도림의 5종류로 나누어 그 특성에 알맞는 경영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소유권의 보호 규정도 명기하고 있다.

2장은 산림관리 내용으로서 전문임업행정기구를 설립하고 임업경영, 목재생산, 임산공업의 추진을 국가관리에서 기업관리체계로 변화시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장은 산림보호로서 산림화재의 예방·복구·남벌의 규제·산림병해방제·희귀동식물의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장은 식수조림에 관한 내용으로 전국 산림율이 30%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장은 산림벌채·이용으로 국유림은 국영임업국을 단위로, 단체 소유림은 현단위로 정하고 전국의 벌채계획은 국가 계획에 의해 통제되는데 계획 이외의 벌채는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고, 연벌채량은 작년 생

산량을 초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장은 조장 및 징벌내용, 7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법 시행 공포전인 동년 1월 5일의 국무원 호령 보고에 의하면 국무원은 “사인방”이 문화혁명기간중 무정부주의를 부추겨서 사회주의 임업법령을 위반하여 중국 산림자원이 심하게 파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에 관한 난별·남별 제지공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와 단체의 산림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침해된 국유림경계는 다시 정리되어야만 하며 소유권의 분쟁은 해결되어야만 한다.
- 2) 난별·남별은 금지되며, 임목으로 물물교환을 해서는 안된다.
- 3) 산림황폐를 금지하고 희귀동식물을 보호한다.
- 4) 불법유통과 불법임목의 운반을 금지한다.
- 5) 산림내 출입을 제한하며, 산림화재발생의 억제를 노력한다.
- 6) 식수조림을 적극 권장하며 합리적 벌채 후 반드시 조림하도록 한다.
- 7) 산림보호에 공이 큰 자는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징계한다.

산림법시행일 시행후인 1982년 1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 5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국의 헌법은 제 9조에서 『산지·초원 등 모든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산림·산지·초원·황폐지 및 하천부지는 제외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 26조에서 『국가는 식수 조림을 계획·장려하고 임목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임업관련 조항을 명문화시키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민족구역자치법(1984년 6기 전민회 2차 회의에서 채택, 1985년 5월 공포) 28조에서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초원과 산림을 보호·건설하여 식수·종초를 계획·장려한다. 그 어느 조직 또는 개인이 어떠한 수단으로 초원 또는 산림을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의 임업보호조항이 하위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와같은 헌법에 기초하여 1979년부터 시험적으로 5년간 운영되어 온 삼림법시행안은 내용을 보완하여 1984년 9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삼림법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17호에 따라 공포되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삼림법은 7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9년도의 시행안과 큰 차이는 없다.

1986년에는 삼림법실시세칙이 삼림법 제40조에 의거 공포되었는데 모두 2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 삼림법시행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던 산림을 30%는 실시세칙(우리나라의 산림법시행령에 해당)에 규정되어 있다. 1987년에는 삼림벌채 및 개신에 관한 관리규칙이 공포되어 벌채 및 개신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1985년에는 산림과 야생동물자연보호관리규정도 공포되어 자연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관심은 1979년 5기 전국인민

대표회의 11차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보호법(시행안)에도 잘나타나 있는데, 동법에서 환경은 산림·초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13~15조에서 산림·초원·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제 13조 : ① 국가의 삼림법규를 엄숙히 준수하여 삼림자원을 보호·육성하고 합리적인 벌채를 행함과 동시에 독단으로 새로운 식수를 행하지 아니하며 삼림을 파괴하는 개간과 남벌을 엄금하고 삼림의 화재를 방지한다.

② 식수조림에 노력하여 황산 및 황지를 녹화하고 사마지대 및 반사마지대를 녹화하며 촌락·도시 및 공·광업지구를 녹화한다. 공장·광산·학교·기관의 내외 및 촌락·도로·하천·가옥 등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지를 이용하여 초목을 식재하고 대지의 원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 14조 : 목초자원을 보호·육성한다. 초원조성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합리적인 방목을 행하며 초원의 재생능력을

보지, 개선하여 초원의 퇴화를 방지하고 초원의 난개발을 엄금하며, 초원의 화재를 방지한다.

제 15조 :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자원을 보호, 증식시키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희귀한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에 대하여는 포획·벌채를 엄금한다.

4. 결언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을 산이 황폐하고 산림자원이 없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산림축적 6m^3 에 비하여 그들은 7m^3 를 가지고 있으며, 1헥타당 우리의 38m^3 에 비하여 그들은 2배에 달하는 73m^3 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임정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경우 임업분야의 발전도 함께 가속화할 것이 예상된다.

쓰레기들

줄입시다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위대한 우리 민족,
꼼꼼이도, 쓰레기도 우선은 10%씩
줄여 봅시다.